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주)청룡환경	
소재지	(152-848)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-22번지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209호, 403호	
대표자성명	윤정섭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한 계	전국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한 계	전국
	대행(지정)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1. 11. 22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

